

대전지방법원 2023. 1. 18 선고 2022가단13825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3. 1. 18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/9 지분에 관하여 2017. 10. 11.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14,986,54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14,986,54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강길연

청 구 원 인

1. 당사자 관계

소외 채무자 C 은 소외 D 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인하고 대출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정한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대출을 받았습니다.

원고는 소외 D 에서 2013.12.31. 채권을 양도 받아 통지한 회사로 소외 채무자 C 에 대한 대출원금 반환채권, 대출원금의 이자, 지연손해금 및 기타채권(이하 양도채권이라 함)의 정당한 양수인입니다.

2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소외 채무자 C 은 원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 155315 대어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따라 소장 접수일인 2022.09.29.일까지 원리금 14,986,547원 및 원금 3,303,107원 에 대하여 소장 접수일 다음날인 2022.09.30.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38.69%의 지연손해금이 있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.

3. 소외 채무자 C 과 피고의 사해행위

가.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래 소외 망 E 의 소유였으나, 사망 후 피고에게만 협의분할 상속이 되었습니다.

문제는 소외 망 E 의 부동산이 피고에게만 상속이 되었으며, 소외 채무자 C 의 경제적 사정이 이와 같음을 알고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소외 망 E 의 부동산을 상속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동기소 2017.11.13. 접수 제 52860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.

나. 사해행위 당시 소외 망 E 의 재산이 별지목록의 부동산이었으며,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제대로 되었다면, 소외 채무자 C 을 상대로 양수금 채권을 청구하기 위한 강제집행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.

- 다 음 -

①. [토지] 대전광역시 중구 [F]

대 161㎡ *

개별공시지가 994,500원 / (단위면적 ㎡)당 산정가격

161㎡ * 994,500 원 = 160,114,500 원

②. 망 [E]의 상속자

= 배우자 [B], 자녀3명([G], [H], [C])

= 소외 채무자 [C]의 상속 지분 9분의 2지분

③. 160,114,500 원 중 소외 채무자 [C]의 상속지분 9분의 2지분

= 35,581,000원

(소외 채무자 [C] 지분 계산시, 35,581,000원 이내, 소장접수 신청일인 2022.09.29.까지의 피보전 채권 14,986,547원에 대하여 청구함)

위와 같이 피고와 소외 채무자 [C]의 사해행위가 없었다면 강제집행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원금 및 연체이자에 대하여 충분히 변제 할 수 있었습니다.

다. 소외 채무자 [C]과 피고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며, 피고 또한 그 사해의사로서 적극 가담하였습니다.

4. 채권자의 취소권의 행사 및 가액배상 청구

피고와 소외 채무자 [C]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고, 원상회복을 청구하여야 하지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해행위 후 새로운 매매계약으로 인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바,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바입니다.

별 지 목 록

1. 대전광역시 중구

대 161번

